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2020. 3.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친환경농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표시기준,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금지 예외 적용 인증기관 범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제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ㆍ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재검사,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에 따른 납입ㆍ신청 방식,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설된 사항들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기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2조제3의2, 별표 11, 별표 12의2)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른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및 유기식품으로 하며, 이외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나.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별표 2의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여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서 발급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다.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제한 예외 적용 인증기관 범위 설정(안 제16조제2항)

1) 인증사업자는 3회 인증신청 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는 연속 인증 신청 가능 기준을 마련함

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금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1) “유기”, “무농약”,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Pesticide”, “Pesticide Free”, “Non-Antibiotic”, “Antibiotic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함

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의 재검사 세부 절차 마련(안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 제67조제5항부터 제7항)

1) 부적합 통보받기 1개월 이내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거나, 시료 수거 절차 및 방법이 잘못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검사 신청 대상, 절차 등을 마련함

바.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

1) 인증사업자등(공시사업자등)에게 압류증 발급, 조치명령 공표 방식 등 기준을 마련함

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 보관 등(안 제55조의2)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관련 자료 보관(3년)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등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함

아. 유기농함량 70% 이상 유기가공식품도 인증을 받도록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마련(안 별표3, 별표5)

1)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30%내에서 비유기원료 사용의 경우, 주 표시면에 "유기" 표시 가능(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자. 인증품(유기농업자재) 및 인증사업자(공시사업자) 사후관리 대상의 범위 구체화(안 제36조제1항, 제67조제1항)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고,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 또는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공시받은 유기농업자재를 판매·유통하는 공시사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조직 및 인력 부문 개선(안 별표9)

1)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조직에서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 명시(유기농업자재 제조·유통·판매, 유기식품등 유통·판매, 인증 관련 기술지도·자문 등 서비스 제공)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카.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의 모집단 기준 개선(안 별표16)

1) 제조일자별 모집단(로트 단위) 방식에서 부적합 원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기준을 보완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든"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으로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축산물

3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4조제6호 및 제7호 중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을 각각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 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ㆍ연구ㆍ보급, 지도ㆍ교육 또는 표준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교육훈련 과정 개설, 교육생 모집, 교육훈련 비용 산정, 강사의 선정기준, 교육훈련 수료 기준, 교육훈련 과정 평가, 불만 처리절차, 관련 기록ㆍ자료의 보관, 개인정보의 보호 등 교육훈련의 운영에 적용되는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4.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 1명 이상을 갖출 것
5.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용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⑥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면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를 “하나를 취급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ㆍ유기벌꿀 제품

나. 유기가공식품

다. 비식용유기가공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4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의 장에게”를 “한다)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를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재심사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인증기관의 장”을 각각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각각 “인증기관에”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각각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를 각각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③ 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인증기관 외에 “보통”, “미흡” 등급을 받은 동일한 인증기관에서는 연속하여 2

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인증의 갱신 등 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사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등 재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거ㆍ정지”를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3항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그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세부

표시사항의”를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세부 표시사항”으로, “시정조치”를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각각 “인증기관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자격 취소 및 정지”를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인증심사 업무”를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심사업무”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호”를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끝났을 때에는”을 “끝났을 때 또는 인증업무를 휴업·폐업 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을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호”를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호”를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1조제4항 전단”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친환경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는 제품의 명칭ㆍ특성ㆍ생산방법ㆍ원재료 정보ㆍ품질정보 등을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또는 “친환경”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ㆍ보증의 표시는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의 표시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ㆍ보증의 표시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ㆍ보증의 표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등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를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품”을 “인증품등”으로, “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을 “인증품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품의”를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으로,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품등을 검사한 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검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사업자등이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인증품등 재검사 신청서에 재검사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함께 첨부하여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30일 이내에 동일 인증품등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성적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생산, 제조·가공, 취급 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에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2.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인증품등의 시료수거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인증품등의 시료수거 과정에 오류가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를 요청한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제1호 따른 재검사는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고 제5항제2호에 따른 재검사는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한다.

⑦ 인증사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실시한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 제목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을 “(인증품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압류 및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세부 표시사항의”를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세부 표시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 대상 인증품등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3제4항 중 “우수”를 ““우수”, “양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취급하여 생산된 제품

제40조의 제목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

생제축산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심사 및”을 “제한, 심사 및”으로, “변경승인”을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지”를 “제거·정지”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를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으로, “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산물등의”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로, ““무농약농산물등표시””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무농약농산물등표시의”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표시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산물등표시””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표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46조 중 “공시라를 ”공시“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의 장에게”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각각 “공시기관에”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공시기관의 장”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0조 전단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를 “공시기관에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 중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시험연구의 신청ㆍ수행 관련 자료 보관 등) ① 시험연구기관은 법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2. 원제(原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동정,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 시험성적 등을 적은 서류
3.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4.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5.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취소처분 등의”를 “취소, 판매금지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기관의 장”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시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호”를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의 취소”를 “공시기관은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후관리비용”을 “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후관리비용”을 “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시기관의 장”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신청ㆍ심사”를 “신청ㆍ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수수료 정산액”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을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받은 유기농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사업자”를 “공시사업자

등”으로 하고, 제2호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를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제3호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시품이”를 “유기농업자재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농업자재의”를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으로,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공시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검사한 결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공시사업자등에게 그 검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시사업자등이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 재검사 신청서에 재검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함께 첨부하여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공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동일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성적서(같은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가공, 취급된 유기농업자재와 동일한 검사항목에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2. 조사공무원 또는 공시심사원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의 시료수거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공시품의 시료 수거 과정에 오류가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를 요청한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는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고, 제5항제2호에 따른 재검사는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⑦ 공시사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실시한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 제목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을 “(유기농업자재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압류 및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4항”을 “법 제49조제7항”으로,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업자”를 “공시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압류한 때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 대상 유기농업자재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된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말한다)에게”를 “말한다)에”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24조”를 “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으로, “제거 또는 정지 처분”을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처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29조제1항”으로, “정지처분”을 “정지 처분, 시정조치 명령”으로 한다.

나. 법 제31조제7항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제70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공시취소 또는 판매금지”를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9조제4항”을 “법 제49조제7항”으로, “판매금지, 회수ㆍ폐기, 공시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사용정지”를 “회수ㆍ폐기, 공시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정취소나”를 “지정취소,”로, “정지처분”을 “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3항”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수료 납부방법은”을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72조제1호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번호 1의 사용가능 물질란에 “라)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을 신설하고, 같은 번호의 사용가능 조건란에 “제9조제2항에 따라”를 “(1) 제9조제2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2) 사

용가능 물질 중 라)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신설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및 2)·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을 준수한 원료에 한함)

이 표의 사용가능 물질의 명칭은「사료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미사료의 명칭을 따른다.

번호	구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1	식물성	곡류(곡물), 곡물부산물류(강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조류(藻類),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가) 유기농산물(유기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2	동물성	단백질류, 낙농가공부산물류	가) 수산물(골뱅이분을 포함한다)은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 나) 포유동물에서 유래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는 반추가축[소·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하지 않을 것
		곤충류, 플랑크톤류	가) 사육이나 양식과정에서 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 것 나)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일 것
		무기물류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유지류	가) 순도 9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나) 반추가축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광물성	식염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	가) 천연의 것일 것 나)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2)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 가능한 물질

이 표의 사용가능 물질의 명칭은「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조사료의 명칭을 따른다.

번호	구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1	천연 결착제		가) 천연의 것이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나)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천연 유화제		
	천연 보존제 : 산미제, 항응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 당분해효소, 지방분해효소, 인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		
	미생물제제 : 유익균, 유익곰팡이, 유익효모, 박테리오파지		
	천연 향미제		
	천연착색제		
	천연 추출제 : 초목추출물, 종자추출물, 세포벽추출물, 동물추출물, 기타추출물		

	올리고당	
2	규산염제	가) 천연의 것일 것 나)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다)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라)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아미노산제 : 아민초산, DL-알라닌, 염산L-라이신, 황산L-라이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 DL-트립토판, L-트립토판, 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비타민제(프로비타민 포함) : 비타민A, 프로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K, 판토텐산, 이노시톨, 콜린, 나이아신, 바이오틴,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완충제 : 산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소다회), 중조(탄산수소나트륨 · 중탄산나트륨)	

3) 축사 및 축사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 중 별표 3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물질(이 경우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다만, 쥐를 잡기 위해 축사 외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은 허용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1	생균제, 효소제, 비타민, 무기물	가)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나) 가축의 면역기능 증진 목적으로 사용할 것

2	예방백신	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 나) 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 출하 할 것
3	구충제	가)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 나) 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 출하 할 것
4	포도당	가) 분만한 가축 등 영양보급이 필요한 가축에 한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나) 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 출하 할 것
5	외용 소독제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한해 사용할 것
6	국부 마취제	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한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나) 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 출하 할 것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무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 병해충 관리는”으로,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1)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 제3호마목2)의 물질을 사

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2) 제1호나목5)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1호다목에 따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7조의2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 취소의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3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등의 농약으로 친환경농업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2)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진 농약은 제외한다.

러. “유기벌꿀 제품” 이란 제3의2호의 인증기준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생산하는 벌꿀·화분·로얄제리·밀납 등의 산물을 말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1)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란 3) 각 표 외의 부분 중 “것”을 “것.”로 하며, 같은 3) 각 표 외의 부분

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3) 교육시간의 가) 및 나)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1) 중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유기농축산물ㆍ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이나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을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 인증”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2) 중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 또는 병해충 및 잡초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ㆍ하천ㆍ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별표 3 제3호가목1)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란 3) 각 표 외의 부분 중 “것”을 “것.”로 하며, 같은 3) 각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

다.

별표 3 제3호가목3) 교육시간의 가) 및 나)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4) 중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으로 하며, 같은 표 바목6) 중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에 사목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을 것

2)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별표 1 제1호나목5)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능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할 것

3) 질병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출하할 것

4)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6) 3)부터 5)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을 비치할 것

별표 3 제3호아목4) 중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자목의 구비 요건란 중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의 규정과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2 각 표 외의 부분 중 “유기양봉”을 “유기벌꿀”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가목5)까지를 각각 가목2)부터 가목6)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6) 각 표 외의 부분 중 “것”을 “것.”로 하며, 같은 6) 각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꿀벌의 사육 및 벌꿀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표 3 제3호의2가목6) 교육시간의 가) 및 나)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2다목1) 중 “양봉 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벌꿀 제품은 유기벌꿀 인증기준”으로, “양봉”을 “벌꿀”로 하며, 같은 표 마목1) 중 “꿀벌 제품”을 “벌꿀 제품”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며, 같은 표 바목2) 중 “유기제품”을 “유기벌꿀 제품”으로 하고, 같은 란 3) 중 “유기양봉”을 “유기벌꿀”로 하고, 같은 란 5) 중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록·문서화 및 접	<삭 제>

근보장	

별표 3 제4호가목3) 각 표 외의 부분 중 “것”을 “것.”로 하며, 같은 3) 각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표 3 제4호가목1) 및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별표 3 제4호가목3) 교육시간의 가) 및 나)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별표 3 제4호나목1) 중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을 “원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하며, 같은 란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원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그 함량과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

제품 구분	유기원료의 함량	비유기 원료 사용 조건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로 표시하는 제품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식품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사료원료(반려동물 사료에 한함)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2)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양축용 사료는 제외)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이상	식품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사료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2)

4) 가공원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원료에 대한 납품서 · 거래인증서 · 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별표 3 제4호라목의 구비 요건란 중 “별표 1”을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표 1”로, 같은 란 중 “물질을”을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로 하고, 같은 표 아목의 구비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목 중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0.01ppm”을 “0.01mg/kg”로 한다.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별표 3 제5호가목1)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란 2) 각 표 외의 부분 중 “것”을 “것.”로 하며, 같은 2) 각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표 3 제5호가목2) 교육시간의 가) 및 나)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별표 3 제5호다목 구비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료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원료에 대한 납품서·거래인증서·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별표 3 제5호마목2) 중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 중 “유기합성 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가목5) 중 “하되, 신규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이전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같은 호 나목5) 중 “처방전 또는 수의사 처방매뉴얼”을 “처방전”으로 하며, 나목8) 중 “한다”를 “하되,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호나목 중 “가공보조재”를 “가공보조제”로 하며, 마목 중 “한다”를 “하되, 신설된 사업장으로 농축산

물·가공품의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최소 1개월 이상)에서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나목2)에 따른 유기 70%로 표시하는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은 유기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유기농산물”을 “유기, 유기농산물”로 하며, 같은 표 나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4호나목2)에 따른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유기 70%”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주 표시면에 표시

별표 5 제2호다목3)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4호나목2)에 따른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유기 70%”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주 표시면에 표시

제4호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중 별표 3 제4호나목2)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 기준

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 한다.

나. 비유기 원료를 제품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주 표시면에 “유기 70%” 또는 이와 같

은 의미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하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별표 7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 중 “(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물과 소금”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목 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원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원재료를 혼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유기원료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하되 글자 크기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의 글자 크기와 같아야 한다.

별표 8 제1호 라목 중 “대상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인증품등의 인증표시 정지와 인증품의 판매정지의 처분은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의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처분한다.

별표 8 제2호가목3)가)(3) 중 “판매하는 경우”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표 3)나)(1) 중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으로 하며, 같은 표 3)나)(2) 중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로,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3)나)(3) 중 “유기농

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을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며, 같은 표 3)다)(7) 중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을 “유기축산물”로 하고, 같은 표 3)다)(8) 중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을 “유기축산물”로 하며, 같은 표 3)다)(9) 중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3)다)(10) 중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을 “유기축산물”로,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3)다)(11) 중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유기축산물에서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3)라) 중 “유기양봉”을 “유기벌꿀”로 하며, 같은 표 3)라)(3) 중 “유기양봉”을 “유기벌꿀”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3)라)(4) 중 “유기양봉”을 “유기벌꿀”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01mg/kg”를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3)라)(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3)라)(6) 중 “유기양봉”을 “유기벌꿀”로 하고, 같은 표 3)라)(7) 중 “유기양봉”을 “유기벌꿀”로 한다.

(5) 유기벌꿀 제품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3)마)(1) 중 “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원료・첨가물・가공보조제”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에 3)마)(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3)마)(4)

를 삭제한다.

(3)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및 그 원료에서 합성농약·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경우			
(가) 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별표 8 제2호가목3)바)(1) 중 “유기합성농약,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합성농약”으로 하며, 같은 표 3)바)(2) 중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3)바)(3) 중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무농약농산물에서 합성농약”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3)사)(5) 중 “투여하거나”를 “투여하고 격리조치를 하지 않거나”로 하며, 같은 표 3)사)(6) 중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을 “무항생제축산물”로 하고, 같은 표 3)사)(7) 중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을 “무항생제축산물”로 하며, 같은 표 3)사)(8) 중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3)사)(9) 중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을 “무항생제축산물”로,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3)사)(10) 중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을

“무항생제축산물에서 합성농약”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에 3)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1)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11 제4호나목2)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증취소	
(2)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가) 원료 인증품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별표 8 제2호가목에 3)자)(1) 및 3)자)(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에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인증취소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에서 합성농약·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경우			
(가) 원료 인증품의 오염 등 불가항		시정명령	인증취소

력적인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별표 8 제2호가목3)자)(3) 중 “사용”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표 4)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6)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때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 또는 판매금지·판매정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
3)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또는 판매금지·판매정지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 표시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5)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광고 금지 및 인증표시 제거·정지

별표 9 제1호 중 “국제전기표준회의”를 “국제전기기술위원회”로, 같은 호 중 “Guide 170 65”를 “17065”로, 같은 호 중 “충족해야 함”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부터 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차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일 것

다. 인증기관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 중에 법 제26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라.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마.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도록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1) 유기농업자재 등 농업용 자재의 제조·유통·판매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유통·판매

3)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자문(諮問) 등의 서비스 제공

차.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인증심의에 관한 사항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나.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9의3 제2호다목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하고, 같은 표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경미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 또	법 제26조의2제3항제3의2호 (법 제35조제2항)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한 경우				

별표 9의3 제2호 “라”목을 “마”목으로, “마”목을 “바”목으로,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사목의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의 1회 위반란 “경고”를 “시정명령”으로 한다.

별표 9의3 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7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8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별표 10 제2호나목 중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로 하고, 같은 표 바목 중 “무농약농산물 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하고, 같은 표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법 제29조제1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 법 제31조제7항제2호·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호 (법 제35조제2항)			

별표 10 제2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법 제32조제2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0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10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27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9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10 제2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1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하. 제32조의2(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2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취소		

별표 11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1)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3) 각 표 외의 부분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3) 각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1 제2호가목3) 교육시간의 가) 및 나)를 삭제하고 같은 목 3)에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1) 중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으로 하며, 같은 표 라목3) 중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가목1)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3) 각 표 외의 부분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3) 각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마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 또는 병해충 및 잡초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ㆍ하천ㆍ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별표 11 제3호가목3) 교육시간의 가) 및 나)를 삭제하고 같은 목 3)에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4) 중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으로 하며, 같은 표 마목4) 중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에 바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1) 중 “취할”을 “취하고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을”로 하고, 같은 란 3)을 삭제하며, 같은 란 2)를 바목3)으로 하고,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3)(종전의 2)) 각 표 외의 부분 중 “시기 외에는”을 “시기에 한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로 한다.

2)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별표 1 제2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능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할 것

6) 3)부터 5)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을 비치할 것

별표 11 제3호 바목3)(종전의 2)) 각 표 외의 부분 중 “없으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고”를 “있으며 이 경우”로 하고, 같은 란에 4) 및 5)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사목4) 중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으로 하고, 같은 표 아목 중 “처리”를 “처리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아목의 구비 요건란 중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로 한다.

4) 2)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가 아닌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인증 받은 가축에서 격리하고 일반 가축으로 판매할 것

5)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별표 1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농약원료가공식품

<table>
<tr><th>심사 사항</th><th>구비 요건</th></tr>
<tr><td>가. 일반</td><td>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table>
<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
<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
<tr><td>교육시간</td><td>2시간 이상</td></tr>
<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
</table></td></tr>
<tr><td>나. 가공원료</td><td>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일 것. 다만, 전체 원재료 함량 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유기식품 함량보다 높을 것
2)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 1 제1호다목1)의 물질을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원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원료에 대한 납품서·거래인증서·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td></tr>
<tr><td>다. 가공방법</td><td>1)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추출, 여과, 저장 등의 과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td></tr>
<tr><td>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td><td>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 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화학적 방법이나</td></tr>
</table>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무농약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별표 1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의 후단은 삭제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본다.

별표 12의 제목 중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별표 12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2) 중 “제1호나목”을 “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무항생제”, “(NON PESTICIDE)”, “(NON ANTIBIOTIC)””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 “(NON PESTICIDE)”, “(NON PESTICIDE FOODS)”, “(NON ANTIBIOTIC)””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표시문자
가. 무농약농산물	1)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 2)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2) 무농약원료 ○○ 3) 무농약 ○○(으)로 만든 가공식품 4) 무농약 ○○(으)로 만든 ○○
다.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

별표 1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기준

(제45조제3항 관련)

1.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일반원칙

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원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인증 받지 아니한 원재료를 혼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제품에 별표 12에 따른 무농약·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

2) “무농약”이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2.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원재료를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물과 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무농약농산물이어야 한다.

2) 무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농약농산물의 원료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하되 글자 크기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의 글자 크기와 같아야 한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무농약농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재료로 무농약농산물을 사용한 제품

1) 특정 원재료로 무농약농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무농약"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무농약농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적 무농약 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무농약 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무농약농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1호 가목1)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표에 라목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아닌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경우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혼합되지 않도록 제조설비, 제조공정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3)라), 제3호나목2) 중 "유기합성농약"을 "합성농약 성분"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 중 "공시기관의 장"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 중 "공시기관의

장”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공시기관의 장”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 중 “시험연구기관의 장”을 “시험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시험연구기관의 장”을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후단 중 “각각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를 “계산하며 위반행위의 원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업자재 모집단에 대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의 “위반행위의 원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업자재 모집단”이란 부적합 원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 유효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라. 공시품의 표시변경, 판매금지, 회수·폐기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의 원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업자재 모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16 제2호나목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시사업자등

별표 16 제2호나목2)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3) 중 “법 제49조제4항 전단”을 “법 제4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표 5)나) 중 “유기합성농약성분”을 “합성농약 성분”으로 하고, 같은 표 5)마)의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의 1회 위반란 “경고”를 “시정명령”으로 하며, 같은 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법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7항	공시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판매금지	

별표 16 제2호다목7)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로 하고, 같은 표 9) 및 10)을 각각 10) 및 9)로 하며, 같은 표 9)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9호”를 “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표 10)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7조제1항제9호 법 제50조제2항제3호

별표 16 제2호다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16 제3호가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가목) 전단 중 “유기농어업자재”를 “유기농업자재”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다목”으로 한다.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시품에 대한 공시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공시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공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 및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공시기관의 장”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후단 중 “공시기관의 장”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다목1)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신청비란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을 “5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란(종전의 나목) 다목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표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별지 제36호의3서식, 별지 제36호의4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제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농약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무농약 표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한적 유기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유기식품등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제한적 유기 표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이하 “무농약농산물 등”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신 설>	다. 무항생제축산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	4. ----------

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	6.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 축산물--------
7.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7.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 축산물----------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

	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 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연구·보급, 지도·교육 또는 표준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교육훈련 과정 개설, 교육생 모집, 교육훈련 비용 산정, 강사의 선정 기준, 교육훈련 수료 기준, 교육훈련 과정 평가, 불만 처리

	절차, 관련 기록·자료의 보관, 개인정보의 보호 등 교육훈련의 운영에 적용되는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4.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 1명 이상을 갖출 것 5.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용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⑥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면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 1. ---------- 제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유기벌꿀 제품 나.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다. 무농약농산물 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마. 무항생제축산물 2. ----------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 한다)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인증기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 ----------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

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인증기관에 ----------. ----------.
<신 설>	②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재심사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가 별표 3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품의 대량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내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의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8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 인증기관에 ----------. 1.·2.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 인증기관----------. ----------.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인증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 또는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① ---------- 인증기관에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신 설>	③ 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인증기관 외에 “보통”, “미흡” 등급을 받은 동일한 인증기관에서는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	④ ---------- 제3항---------- 인증기관에 ----------. ----------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

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낼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 인증기관에 ----------. ⑤ 인증기관----------. ⑥ 제5항----------. 제16조의2(인증의 갱신 등 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사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등 재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

	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인증기관에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처분의 기준·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
<신 설>	제19조의2(과징금 부과·징수절차) ① 영 제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

	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② (생 략)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동등성 인정 지위의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31조제7항---------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세부 표시사항 ---------- 필요한 조치----------.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인증기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 인증기관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

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32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9의3과 같다.	⑤ ----------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제32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기관 등) ① ----------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심사업무----------.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하	제33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 3년 ---------

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신청자"라 한다)와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1개월 이내에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 끝났을 때 또는 인증업무를 휴업·폐업 한 때에는 ---------- ---------- ---------- ---------- ---------- ---------- ---------- ---------- ----------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 ---------- ---------- ----------. ---------- ---------- ---------- ---------- ------.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④ ----------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인증사업자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1. (현행과 같음) 2. ---------- 제31조제7항----------
제34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①·② (생 략)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34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
<신 설>	제35조의2(친환경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는 제품의 명칭·특성·생산방법·원재료 정보·품질정

	보 등을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또는 “친환경”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보증의 표시는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의 표시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보증의 표시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보증의 표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등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6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 또는 판매·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1. 인증품등 ------- 인증사업자등----------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	② ----------

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1. 인증품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 2. 인증품등의 표시사항, ----------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 등---------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품등을 검사한 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검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사업자등이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인증품등 재검사 신청서에 재검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함께 첨부하여 그

<신 설>	검사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30일 이내에 동일 인증품등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성적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생산, 제조·가공, 취급 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에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2.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인증품등의 시료수거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인증품등의 시료수거 과정에 오류가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를 요청한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제1호 따른 재검사는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에 한정

	하고 제5항제2호에 따른 재검사는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인증사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실시한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7조(인증품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압류 및 공표) ① 법 제31조제7항--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세부 표시사항 ----------.
<신 설>	②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 대상 인증품등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3(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① ~ ③ (생 략)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37조의3(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우수", "양호"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	제38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

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장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제4장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39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취

취급하는 자	급하여 생산된 제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0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①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제41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등) ① -- 제한, 심사 및 --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 처분의 절차·기준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 제거·정지 ----------.
제42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제42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 인증사업자등 -----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 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제43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의 범위) ----------.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무농약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1.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4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제4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등) ----------.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제45조(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	제45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표

농약농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농약농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시기준 등) ①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등표시"로 본다.	②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표시의 ----------.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표시"----------.
<신 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46조(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 ---------- "공시"라 ----------.
1. ~ 2. (생 략)	1. ~ 2. (생 략)
제48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제48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① ----------

공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한다)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 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 공시기관에 ----------. ----------.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④ ----------

시료(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그 공시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시기관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9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① 공시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① 공시기관----------. ---.
② 공시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공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이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은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② 공시기관----------

및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공시사업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 공시기관에 ----------. ----------.
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①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갱신하려는 공시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	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① ---------- 공시기관에 ----------. ----------

와 제4호의 시료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시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공시사업자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공시기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 실적을 작성하여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공시기관에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제55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신 설>	---------- ---------- ----- 같다. 제55조의2(시험연구의 신청·수행 관련 자료 보관 등) ① 시험연구기관은 법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2. 원제(原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동정,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 시험성적 등을 적은 서류 3.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4.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5.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공시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7조(공시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 취소, 판매금지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 ----------.
제61조(공시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공시기관의 장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공시기관의 장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제61조(공시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등) ① ---------- 공시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시기관에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공시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공시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62조(공시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공시기관----------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시기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시의 신청·심사 서류 보관 등) ① 공시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 또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3	제63조(공시의 신청·심사 서류 보관 등) ①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1항----------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가 갱신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던 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
1.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하여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 또는 서류와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 또는 서류	1. ---------- 공시기관에 ----------
2. 공시의 갱신 신청을 위하여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 또는 서류와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 또는 서류	2. ---------- 공시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의 취소, 품질관리 지도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 공시기관은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④ ----------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취소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사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공시기관의 장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시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수료 ---------- 공시기관에 ----------. ---------- 수수료 ----------.
⑤ 공시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4호에 따라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공시기관----------.
제64조(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① 공시기관의 장이 법 제45조제4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	제64조(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① 공시기관----------. ----------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공시기관의 장은 직접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불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시 심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시기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시 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① (생 략)	제65조(공시 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시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휴업의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한다)	1. ---------- 신청·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	3. 수수료 정산액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실시하는 유기농	제67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의 사후관리) ① ---------- 유기

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농업자재 및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판매·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1. 유기농업자재 판매장 또는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	1. ---------- 공시사업자등----------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신 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공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항목(주성분 등)에 대한 검정조사	1. 유기농업자재가 ----------
2. 유기농업자재의 수입,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공시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2.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 ---------- 공시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 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④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검사한 결과 제47조제1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공시사업자등에게 그 검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시사업자등이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 재검사 신청서에 재검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함께 첨부하여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공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동일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성적서(같은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가공, 취급된

	유기농업자재와 동일한 검사항목에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2. 조사공무원 또는 공시심사원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의 시료수거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공시품의 시료 수거 과정에 오류가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를 요청한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는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고, 제5항제2호에 따른 재검사는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공시사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실시한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8조(유기농업자재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압류 및 공표) ① 법 제49조제7항------ 공시사업자등----------.
<신 설>	②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압류한 때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 대상 유기농업자재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된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

	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 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공시기관의 지정의 취소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공시기관의 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69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 공시기관---------- 말한다)에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공시기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0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인증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2. ----------
가.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	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처분----------3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회수·폐기,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7항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4. 법 제29조제1항---------- 정지 처분, 시정조치 명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생 략)	제70조의2(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공시번호, 공시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2. ----------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자	가. ----------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
나.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판매금지, 회수·폐기, 공시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나. 법 제49조제7항---------- 회수·폐기, 공시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시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6. ---------- 지정취소, ---------- 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제71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공	② ----------. ----------

시기관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 략) 제72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5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생 략)	---------- 수수료는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 1.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2. (현행과 같음)

□ 시행규칙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1	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

번호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1	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다)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	(1)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

	다)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1)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구분	세 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식물성	곡물류	가) 옥수수·보리·밀·수수·호밀·귀리·조·피·트리트케일·메밀·루핀종실 및 두류 나) 가)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파 전분을 포함한다)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곡물부산물(강피류)	곡쇄류·밀기울·말분·보릿겨·쌀겨·쌀겨탈지·옥수수피·수수겨·조겨·두류피·낙화생피·면실피·귀리겨·아몬드피 및 해바라기피	○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
	제약부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 부산물	
	유지류	옥수수유, 대두유, 면실유, 채종유, 야자유, 해바라기유, 팜유 및 쌀겨기름	
	박류(단백질류)	대두박(전지대두를 포함)·들깻묵·참깻묵·채종박·면실박·낙화생박·고추씨박·아마박·야자박·해바라기씨박·피마자박·옥수수배아박·소맥배아박·두부박·케이폭박, 팜유박, 글루텐 및 주정박	
	근괴	고구마, 감자, 돼지감자, 타피오	○ 곡물류

	수한 가금 퇴구비 라)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	비·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가능 물질 중 라)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은 유기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1)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을 준수한 원료에 한함)

이 표의 사용가능 물질의 명칭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미사료의 명칭을 따른다.

번호	구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1	식물성	곡류(곡물), 곡물부산물류(강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조류(藻類),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가) 유기농산물(유기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2	동물성	단백질류, 낙농가공부산물류	가) 수산물(골뱅이분을 포함한다)은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 나) 포유동물에서 유래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는 반추가축[소·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

	류	카, 무 및 당근	와 같음
	식품 가공 부산물	두류 가공 부산물, 당밀 및 과실류 가공부산물	○ 곡물 부산물류와 같음
	해조류	해조분	○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섬유질류	목초, 산야초, 나뭇잎, 곡류 정선 부산물, 임산 가공 부산물, 볏짚, 보리짚, 그 밖의 농산물 고간류, 풋베기 사료작물, 옥수수 속대, 사탕수수박, 사탕무우박, 감귤박 및 발효사료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다만,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동물성	단백질류	어분・어즙흡착사료, 유・유제품 및 육분・육골분(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어분・어즙 흡착사료에 한함)이거나 유기수산물일 것
	무기물류	골분・어골회 및 패분	○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유지류	우지 및 돈지(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순도 9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광물성	식염류	암염 및 천일염	○ 천연의 것일 것. 다만, 이러한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	
	광물질 첨가물	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칼륨・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 및 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	
	혼합 광물질	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만 해	

			용하지 않을 것
		곤충류, 플랑크톤류	가) 사육이나 양식과정에서 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 것 나)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일 것
		무기물류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유지류	가) 순도 9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나) 반추가축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광물성	식염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	가) 천연의 것일 것 나)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당함	

2)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구 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산미제	젖산, 개미산 등 천연 산미제	천연의 것 및 천연에서 유래한 것
항응고제	활성탄	
결착제	천연 결착제	
유화제	천연 유화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천연 항산화제 천연 항곰팡이제	
향미제	천연 향미제	
착색제	천연 착색제	
추출제	유카추출물·타우마린·목초 추출물·해초 추출물 및 과실 추출물	
완충제	중조·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	
올리고당류	갈락토 올리고당, 플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대두 올리고당, 만노스 올리고당 및 그 밖의 올리고당	
효소제	아밀라제, 알카리성 프로테아제, 키시라나아제, 피타아제, 산성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중성 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 락타아제 및 그 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	
생균제	엔테로콕카스페시엄, 바실러스코아글란스, 바실러스서브틸리스, 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 락토바실러스아시도필루스, 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	
규산염제	제올라이트·벤토나이트·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	천연의 것일 것. 다만, 이러한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아미노산제	아민초산, DL-알라닌, 염산L-라이신, 황산L-라이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 DL-트립토판, L-트립토판, 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 포함)	비타민A, 프로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K, 판토텐산, 이노시톨, 콜린, 나이아신, 바이오틴,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3) 축사 및 축사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 중 별표 3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물질. 이 경우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4)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2)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 가능한 물질

이 표의 사용가능 물질의 명칭은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조사료의 명칭을 따른다.

번호	구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1	천연 결착제		가) 천연의 것이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나)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천연 유화제		
	천연 보존제	: 산미제, 항응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 당분해효소, 지방분해효소, 인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	
	미생물제제	: 유익균, 유익곰팡이, 유익효모, 박테리오파지	
	천연 향미제		
	천연착색제		
	천연 추출제	: 초목추출물, 종자추출물, 세포벽추출물, 동물추출물, 기타추출물	
	올리고당		
2	규산염제		가) 천연의 것일 것 나)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다)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라)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아미노산제	: 아민초산, DL-알라닌, 염산L-라이신, 황산L-라이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 DL-트립토판, L-트립토판, 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비타민제(프로비타민 포함)	: 비타민A, 프로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K, 판토텐산, 이노시톨, 콜린, 나이아신, 바이오틴,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완충제	: 산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소다회), 중조(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3) 축사 및 축사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 중 별표 3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물질(이 경우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다만, 쥐를 잡기 위해 축사 외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은 허용한다.

4)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이 경우 허용범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2. 무농약농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무농약농산물: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 제3호마목2)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별표 2의2]

<신설>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이 경우 허용범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5) 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1	생균제, 효소제, 비타민, 무기물	가)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나) 가축의 면역기능 증진 목적으로 사용할 것
2	예방백신	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 나) 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 출하 할 것
3	구충제	가)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 나) 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 출하 할 것
4	포도당	가) 분만한 가축 등 영양보급이 필요한 가축에 한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나) 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 출하 할 것
5	외용 소독제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한해 사용할 것
6	국부 마취제	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한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나) 약품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 출하 할 것

2.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무농약농산물: 병해충 관리는 제1호가목2)에 따른 사용 가능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1)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 제3호마목 2)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2) 제1호나목5)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1호다목에 따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7조의2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 취소의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제4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유기합성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라. "돌려짓기(윤작)"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마. 삭제 <2016. 8. 26.>

바.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사. "유기사료"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아. 삭제 <2016. 8. 26.>

자.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차.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등의 농약으로 친환경농업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2)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진 농약은 제외한다.

라. "돌려짓기(윤작)"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마. 삭제 <2016. 8. 26.>

바.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사. "유기사료"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아. 삭제 <2016. 8. 26.>

자.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차.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

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카.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타.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파. 삭제 <2016. 8. 26.>

하.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거. 삭제 <2016. 8. 26.>

너.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더.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시간</td><td>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td></tr><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종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카.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타.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파. 삭제 <2016. 8. 26.>

하.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거. 삭제 <2016. 8. 26.>

너.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더.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러. "유기벌꿀 제품"이란 제3의2호의 인증기준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생산하는 벌꿀·화분·로얄제리·밀납 등의 산물을 말한다.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table><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시간</td><td>2시간 이상</td></tr><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종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를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이나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완전히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1)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수확·저장·포장·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4)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이 아닐 것 3)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시간</td><td>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td></tr><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
나. 사육 조건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무항생제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를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완전히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 관리 등	1)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수확·저장·포장·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4)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이 아닐 것 3)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 또는 병해충 및 잡초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하천·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table><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시간</td><td>2시간 이상</td></tr><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
나. 사육 조건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무항생제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

	서 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않을 것 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다. 자급 사료 기반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라.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호르몬 처리 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젖을 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마. 전환 기간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table><tr><th>가축의 종류</th><th>생산물</th><th>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th></tr><tr><td>한우·육우</td><td>식육</td><td>입식 후 12개월</td></tr><tr><td>젖소</td><td>시유 (시판우유)</td><td>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td></tr><tr><td rowspan="2">산양</td><td>식육</td><td>입식 후 5개월</td></tr><tr><td>시유 (시판우유)</td><td>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td></tr><tr><td>돼지</td><td>식육</td><td>입식 후 5개월</td></tr><tr><td>육계</td><td>식육</td><td>입식 후 3주</td></tr><tr><td>산란계</td><td>알</td><td>입식 후 3개월</td></tr><tr><td rowspan="2">오리</td><td>식육</td><td>입식 후 6주</td></tr><tr><td>알</td><td>입식 후 3개월</td></tr><tr><td>메추리</td><td>알</td><td>입식 후 3개월</td></tr><tr><td>사슴</td><td>식육</td><td>입식 후 12개월</td></tr></table>
바. 사료 및 영양관리	1)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생초나 건초 등의 거친 먹이)를 급여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4)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않을 것 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다. 자급 사료 기반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라.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호르몬 처리 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젖을 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마. 전환 기간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table><tr><th>가축의 종류</th><th>생산물</th><th>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th></tr><tr><td>한우·육우</td><td>식육</td><td>입식 후 12개월</td></tr><tr><td>젖소</td><td>시유 (시판우유)</td><td>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td></tr><tr><td rowspan="2">산양</td><td>식육</td><td>입식 후 5개월</td></tr><tr><td>시유 (시판우유)</td><td>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td></tr><tr><td>돼지</td><td>식육</td><td>입식 후 5개월</td></tr><tr><td>육계</td><td>식육</td><td>입식 후 3주</td></tr><tr><td>산란계</td><td>알</td><td>입식 후 3개월</td></tr><tr><td rowspan="2">오리</td><td>식육</td><td>입식 후 6주</td></tr><tr><td>알</td><td>입식 후 3개월</td></tr><tr><td>메추리</td><td>알</td><td>입식 후 3개월</td></tr><tr><td>사슴</td><td>식육</td><td>입식 후 12개월</td></tr></table>
바. 사료 및 영양관리	1)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생초나 건초 등의 거친 먹이)를 급여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5)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

	5)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6)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사.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것 2)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을 거칠 것 3)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5) 1) 또는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비치할 것
아.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1) 살아있는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용하게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축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4)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자. 가축 분뇨의 처리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3의2. 유기양봉 제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신 설> 1)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벌통의 반경 3㎞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3)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것 4) 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물

	수를 상시 급여할 것 6)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사.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을 것 2)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별표 1 제1호나목5)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능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할 것 3) 질병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출하할 것 4)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6) 3)부터 5)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을 비치할 것
아.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1) 살아있는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용하게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축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4)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자. 가축 분뇨의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제13조의2까지의 규정과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3의2. 유기벌꿀 제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꿀벌의 사육 및 벌꿀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것 2)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 3) 벌통의 반경 3㎞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4)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것 5) 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물

<table>
<tr><td></td><td>성 기름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것
5)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시간</td><td>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td></tr><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td></tr>
<tr><td>나. 꿀벌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td><td>1)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td></tr>
<tr><td>다. 전환기간</td><td>1) 양봉 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년 이상 준수한 후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것</td></tr>
<tr><td>라. 먹이 및 영양관리</td><td>1) 꿀벌에게는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이를 제공할 것</td></tr>
<tr><td>마.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td><td>1) 꿀벌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
2)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꿀벌의 질병은 사전에 예방할 것
4)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eucalyptol), 캠퍼(camphor)], 바실루스 튜린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증기 및 직사 화염
5) 3) 및 4)에 따른 예방·관리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것
6)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칠 것</td></tr>
<tr><td>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td><td>1)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제품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를 포함한다)인 방법이어야 하고, 가공으로 인해 유기양봉 제품이 오염되지 않을 것
4)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5)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td></tr>
<tr><td>사. 기록</td><td>1) 꿀벌의 사육 및 양봉 제품의 생산 판매 등</td></tr>
</table>

<table>
<tr><td></td><td>성 기름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것
6)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table><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시간</td><td>2시간 이상</td></tr><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td></tr>
<tr><td>나. 꿀벌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td><td>1)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td></tr>
<tr><td>다. 전환기간</td><td>1) 벌꿀 제품은 유기벌꿀 인증기준을 적어도 1년 이상 준수한 후 유기적으로 생산된 벌꿀 제품으로 판매할 것</td></tr>
<tr><td>라. 먹이 및 영양관리</td><td>1) 꿀벌에게는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이를 제공할 것</td></tr>
<tr><td>마.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td><td>1) 벌꿀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
2) 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꿀벌의 질병은 사전에 예방할 것
4)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eucalyptol), 캠퍼(camphor)], 바실루스 튜린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증기 및 직사 화염
5) 3) 및 4)에 따른 예방·관리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것
6)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칠 것</td></tr>
<tr><td>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td><td>1)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벌꿀 제품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를 포함한다)인 방법이어야 하고, 가공으로 인해 유기벌꿀 제품이 오염되지 않을 것
4)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5)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td></tr>
<tr><td>사. 기록</td><td><식 제></td></tr>
</table>

·문서화 및 접근보장	의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것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신 설>
나. 가공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원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그 함량과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

·문서화 및 접근보장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4)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나. 가공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원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그 함량과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

제품 구분	유기원료의 함량	비유기 원료 사용 조건	
		유기가공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유기로 표시하는 제품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식품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사료원료(반려동물 사료에 한함)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 1)·2)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양축용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	식품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 다목1)	사료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 나목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신 설>
다. 가공 방법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식품·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유기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유기가공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ppm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5.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사료는 제외) | 0% 이상 | 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 1)·2)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원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원료에 대한 납품서·거래인증서·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다. 가공 방법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식품·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유기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유기가공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사업자는 유기식품·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5.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작업장 시설기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다. 원료관리	유기식품만을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의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보관할 것
라. 취급방법 등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입(混入, 한데 섞거나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생산물의 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마.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는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6.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할 것
나. 수량관리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실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할 것

7. 삭제 <2016. 8. 26.>

[별표 4]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

가. 농산물·임산물

1)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파종·식재일, 수확일

	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3)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나. 작업장 시설기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다. 원료관리	원료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원료에 대한 납품서·거래인증서·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라. 취급방법 등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입(混入, 한데 섞거나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생산물의 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마.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는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6.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할 것
나. 수량관리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실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할 것

7. 삭제 <2016. 8. 26.>

[별표 4]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

가. 농산물·임산물

1)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파종·식재일, 수확일

2) 농산물·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산물·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4)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보관량, 구매 영수증

5) 1)부터 4)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하되(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신규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이전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나. 축산물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2)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구입량·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4)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사용량·보관량, 구매영수증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 처방전 또는 수의사 처방매뉴얼

6)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7)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가공량, 도축·가공업체명

8) 1)부터 7)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2. 제조·가공 및 취급자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가공식품의 입고·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2) 농산물·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산물·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4)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보관량, 구매 영수증

5) 1)부터 4)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하되(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나. 축산물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2)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구입량·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4)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사용량·보관량, 구매영수증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 처방전

6)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7)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가공량, 도축·가공업체명

8) 1)부터 7)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제조·가공 및 취급자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가공식품의 입고·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신설된 사업장으로 농축산물·가공품의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최소 1개월 이상)에서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

[별표 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제1호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 "(ORGANIC)",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장할 수 있다.

[별표 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제1호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 제4호나목2)에 따른 유기 70%로 표시하는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은 유기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 "(ORGANIC)",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유기표시 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축산물	1)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유기농 2) 유기재배○○(○○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기축산○○, 유기○○ 또는 유기농○○
나. 유기가공식품	1)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2) 유기농○○ 또는 유기○○
다. 비식용유기가공품	1) 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 2) 유기농○○ 또는 유기○○(○○은 사료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다만,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3. 삭제 <2016. 8. 26.>

4. <신 설>

[별표 7]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제한적 유기표시의 일반원칙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제품에 별표 5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2)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유기표시 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가. 유기농축산물	1) 유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유기농 2) 유기재배○○(○○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기축산○○, 유기○○ 또는 유기농○○
나. 유기가공식품	1)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2) 유기농○○ 또는 유기○○
다. 비식용유기가공품	1) 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 2) 유기농○○ 또는 유기○○(○○은 사료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다만,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3. 삭제 <2016. 8. 26.>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중 별표 3 제4호나목2)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 기준

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 한다.

나. 비유기 원료를 제품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주 표시면에 "유기 70%"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하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별표 7]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제한적 유기표시의 일반원칙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나. 가목에 해당하는 원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원재료를 혼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제품에 별표 5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2)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물과 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어야 한다.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
1)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적 유기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유기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유기농축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마. 제2호의 인증품등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기원료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하되 글자 크기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의 글자 크기와 같아야 한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
1)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적 유기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유기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유기농축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라.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인증품등의 인증표시 정지와 인증품의 판매정지의 처분은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제2호의 인증품등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바.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의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3)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 제4항)		
가) 공통기준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2)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 취소	
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1)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시정 명령	인증취소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3)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 제4항)		
가) 공통기준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2)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인증 취소	
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1)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		시정 명령	인증취소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3)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3)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다) 유기축산물				다) 유기축산물			
(1)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1)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2)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2)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3)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별표 3 제3호바목1)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증취소		(3)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별표 3 제3호바목1)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증취소	
(4)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인증취소		(4)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인증취소	
(5)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을 사용한 날부터 전환기간(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말한다)을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인증취소		(5)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을 사용한 날부터 전환기간(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말한다)을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인증취소	
(6) 질병이 없는데도		인증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취소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7)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7) 유기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8)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8) 유기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9)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9)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10)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10) 유기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11)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		인증취소		(11) 유기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인증취소	

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라) 유기양봉 제품			
(1)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2)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		인증취소	
(3) 유기양봉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4) 유기양봉 제품에서 꿀벌의 먹이습성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01mg/kg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5) 유기양봉 제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01mg/kg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6) 유기양봉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7) 유기양봉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		인증취소	

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라) 유기벌꿀 제품			
(1)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2)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		인증취소	
(3) 유기벌꿀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4) 유기벌꿀 제품에서 꿀벌의 먹이습성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5) 유기벌꿀 제품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6) 유기벌꿀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7) 유기벌꿀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인증취소	

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마)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마)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1)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3 제4호나목 2)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증취소		(1)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3 제4호나목2)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증취소	
(2)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2)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3)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서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mg/kg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3)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및 그 원료에서 합성농약·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경우			
				(가) 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mg/kg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바) 무농약농산물				바) 무농약농산물			
				(1) 무농약농산물의		인증	

(1)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2)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3)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사) 무항생제축산물			
(1)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2)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3)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인증취소	
(4)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을 사용한 날부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인증취소	
(5) 출생, 분만, 부화, 거세(去勢)		인증취소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합성농약,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취소	
(2) 무농약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3) 무농약농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사) 무항생제축산물			
(1)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2)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3)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인증취소	
(4)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을 사용한 날부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인증취소	
(5) 출생,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별표 11 제		인증취소	

등 별표 11 제3호바목2)에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 외의 시기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3호바목2)에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 외의 시기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고 격리조치를 하지 않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6)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6)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7)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7)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8)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8)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9)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9) 무항생제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10)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10) 무항생제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	
				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1)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11 제4호나목2)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증취소	
				(2)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가) 원료 인증품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아) 취급자				자) 취급자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에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인증취소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에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인증취소	

(2) 원료 인증품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농산물·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다)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mg/kg 이하로 검출된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 축산물에서 합성농약·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경우 (가) 원료 인증품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시정명령 인증취소	인증취소
(3)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		인증취소		(3)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	

산물・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4)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 취소	
(5)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mg/kg을 초과한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인증 취소	
(6)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5)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6)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시정 명령	

나. 인증품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7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5)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 제4항)	인증 취소	
6)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7항 (법 제34조제5항)	시정 명령	

나. 인증품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때	법 제31조 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 또는 판매금지·판매정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 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

3) 인증품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 제5항)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 제4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5)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 제4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광고 금지 및 인증표시 제거·정지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 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다)은 유기농업자재의 제조·유통·판매나 유기식품등 인증,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3)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법 제31조 제7항 (법 제34조 제5항)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또는 판매금지·판매정지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 표시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 제7항 (법 제34조 제5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5)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 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광고 금지 및 인증표시 제거·정지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일 것

다. 인증기관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 중에 법 제26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갖출 것. 다만, 이직·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
3) 인증심사원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일 것
4) 인증기관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 중에 법 제26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에 따른 검정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할 것
2)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하는 자가 없을 것
라.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마.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도록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1) 유기농업자재 등 농업용 자재의 제조·유통·판매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유통·판매
3)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자문(諮問) 등의 서비스 제공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에 따른 검정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할 것
2)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1)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2)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9의3]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32조의2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법제26조의2 제3항제1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2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 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3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 취소		
<신 설>				

않는다는 사항

차.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인증심의에 관한 사항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나.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9의3]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32조의2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법제26조의2 제3항제1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2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 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3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 취소		
라. 경미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	법 제26조의2제3항제3의2호	시정 명령	자격 정지 3개	자격 정지 6개

라.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4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마.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5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바.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6호 (법 제35조제2항)	경고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신 설>				
<신 설>				

[별표 10]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 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월	월
마.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4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바.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5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사.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이 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의2 제3항제6호 (법 제35조제2항)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아.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의2제3항제8호 (법 제35조제2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별표 10]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삼진 아웃제에 따라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승계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회 이상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다른 인증기관이 행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하여는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횟수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호의2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2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3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삼진 아웃제에 따라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승계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회 이상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다른 인증기관이 행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하여는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횟수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의2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2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3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4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5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21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6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7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법 제26조제6항(제35조제2항에	법 제29조제1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4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5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21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6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 법 제31조제7항제2호·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7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법 제26조제6항(제35조	법 제29조제1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조직 및 인력, 시설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8호 (법 제35조제2항)	3개월	6개월	
차. 법 제26조제6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증업무규정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8호 (법 제35조제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신 설>				
카. 법 제32조제2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9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신 설>				
<신 설>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조직 및 인력, 시설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8호 (법 제35조제2항)	3개월	6개월	
차. 법 제26조제6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증업무규정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8호 (법 제35조제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카. 법 제27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9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타. 법 제32조제2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0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1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하. 제32조의2(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제12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취소		

[별표 11]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무농약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방법	1)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완전히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별표 11]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무농약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방법	1)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완전히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5)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수경재배 및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table><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시간</td><td>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td></tr><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관리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3)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1) 교배는 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젖을 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라. 전환기간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무항생제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5)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수경재배 및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 2)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 또는 병해충 및 잡초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하천·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table><tr><td>과정명</td><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tr><tr><td>교육주기</td><td>2년에 1회</td></tr><tr><td>교육시간</td><td>2시간 이상</td></tr><tr><td>교육기관</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tr></table>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관리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3)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4)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1) 교배는 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젖을 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라. 전환기간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무항생제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가축의 종류	생산물	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12개월
젖소	시유(시판우유)	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5개월
	시유(시판우유)	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5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1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12개월

마. 사료 및 영양 관리

1) 무항생제가축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3)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바.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출생,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 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고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출하할 것

가축의 종류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가) 출생 후 2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0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젖소	시유(시판우유)	가) 출생 후 2개월 이내 나) 분만
산양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유(시판우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가축의 종류	생산물	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12개월
젖소	시유(시판우유)	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5개월
	시유(시판우유)	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5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1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12개월

마. 사료 및 영양 관리

1) 무항생제가축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3)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4)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바.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을 것
2)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별표 1 제2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능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할 것
3) 출생,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에 한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출하할 것

가축의 종류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가) 출생 후 2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0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젖소	시유(시판우유)	가) 출생 후 2개월 이내 나) 분만
산양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

	유)	
돼지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오리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알	부화 후 3주 이내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사슴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3) 생산성 촉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신 설>

사.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1) 살아있는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용하게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축산물은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축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4)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아. 가축분뇨의 처리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신 설>

		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유(시판우유)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돼지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오리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알	부화 후 3주 이내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사슴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2)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가 아닌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인증 받은 가축에서 격리하고 일반 가축으로 판매할 것
5)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6) 3)부터 5)까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을 비치할 것

사.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1) 살아있는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용하게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축산물은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축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4)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아. 가축분뇨의 처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4.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심사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증사업자는 4년에 1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가공 원료	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일 것. 다만, 전체 원재료 함량 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유기식품 함량보다 높을 것 2)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 1 제1호다목 1)의 물질을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원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원료에 대한 납품서·거래인증서·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다. 가공 방법	1)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추출, 여과, 저장 등의 과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 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무농약 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취급과정에서

4.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5. 거래인증서: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산, 제조·가공, 취급"은 "생산 또는 취급"으로 본다.

[별표 12]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5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

· 문서화 및 접근 보장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5.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본다.

6. 거래인증서: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별표 12]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기준(제45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라. 작도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제1호나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로 표기할 수 있다.

3)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4)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5) 표시 도형 내부의 "무농약", "무항생제", "(NON PESTICIDE)", "(NON ANTIBIOT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6)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 한다.

7)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8)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9)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표시문자

구분	표시문자
무농약농산물	가.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 나.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제1호다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로 표기할 수 있다.

3)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4)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5) 표시 도형 내부의 "무농약",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 "(NON PESTICIDE)", "(NON PESTICIDE FOODS)", "(NON ANTIBIOT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6)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B100으로 한다.

7)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8)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9)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표시문자

구분	표시문자
가. 무농약농산물	1)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 2)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2) 무농약원료 ○○

비고

1.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별표 12의2]

<신설>

	3) 무농약 ○○(으)로 만든 가공식품 4) 무농약 ○○(으)로 만든 ○○
다.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

비고

1.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별표 12의2]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기준

(제45조제3항 관련)

1.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일반원칙

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원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인증 받지 아니한 원재료를 혼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제품에 별표 12에 따른 무농약·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
2) "무농약"이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2.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원재료를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물과 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무농약농산물이어야 한다.
2) 무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농약농산물의 원료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하되 글자 크기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의 글자 크기와 같아야 한다.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경영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장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시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조설비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 및 원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공정 및 품질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유지하여야 하며, 제품하자 등의 처리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기록 및 이력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바. 그 밖의 사항	1)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받은 수입완제품은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비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라목 중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비요건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 기준
가. 원료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무농약농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재료로 무농약농산물을 사용한 제품

1) 특정 원재료로 무농약농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무농약"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무농약농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적 무농약 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무농약 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무농약농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경영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시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조설비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 및 원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공정 및 품질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유지하여야 하며, 제품하자 등의 처리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아닌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경우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혼합되지 않도록 제조설비, 제조공정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기록 및 이력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바. 그 밖의 사항	1)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받은 수입완제품은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비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라목 중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비요건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 기준
가. 원료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발생한 대사산물(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원균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라)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마) 「식물방역법」 제10조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사)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아)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원료의 특성 및 유래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별로 출처가 명확하여야한다.
다. 제조조성비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명,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주성분 검사	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나)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2)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보증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적명, 보증 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4)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효능·효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공시품에 한정하여 주성분, 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발생한 대사산물(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원균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라)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마) 「식물방역법」 제10조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사)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아)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원료의 특성 및 유래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별로 출처가 명확하여야한다.
다. 제조조성비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명,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주성분 검사	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나)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2)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보증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적명, 보증 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4)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효능·효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공시품에 한정하여 주성분, 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이나 「비료관리법」에서 분석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분석방법에 따르며,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유해성분 검사	1)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그 외의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 및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유식물 등에 대한 농약피해[藥害]·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	1) 다섯 가지 작물 이상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2) 농약피해[藥害]·비료피해[肥害]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2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나. 비료효과[肥效]·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개량 또는 작물생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용하고, 동일 작물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물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작물재배 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2)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비료피해[肥害]가 없어야 한다.
다.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병해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용하고, 동일 작물·병해충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물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작물에 대한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2) 농약효과[藥效]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방제가(防除價, 병충해에 대한 농약의 방제효과를 표시하는 수치)를 고려하여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농약피해[藥害]가

	이나 「비료관리법」에서 분석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분석방법에 따르며,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유해성분 검사	1)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그 외의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 및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유식물 등에 대한 농약피해[藥害]·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	1) 다섯 가지 작물 이상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2) 농약피해[藥害]·비료피해[肥害]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2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나. 비료효과[肥效]·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개량 또는 작물생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용하고, 동일 작물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물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작물재배 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2)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비료피해[肥害]가 없어야 한다.
다.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병해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용하고, 동일 작물·병해충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물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작물에 대한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2) 농약효과[藥效]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방제가(防除價, 병충해에 대한 농약의 방제효과를 표시하는 수치)를 고려하여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농약피해

	없어야 한다.
라. 예외사항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공통조건	1)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허용물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 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독성 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1)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농업자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성에 대하여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나. 독성	1)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안점막 자극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제조공정	1)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 등이 혼입·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7. 포장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포장지 표기방법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1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제49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藥害]가 없어야 한다.
라. 예외사항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공통조건	1)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허용물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 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독성 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1)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농업자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성에 대하여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나. 독성	1)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안점막 자극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가. 제조공정	1)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 등이 혼입·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7. 포장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포장지 표기방법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1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제49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제품심사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성분의 정성(定性)·정량(定量)분석을 하거나 유해성분(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다), 농약성분, 항생물질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3. 서류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붙임의 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 심사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종합심사
가. 공시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공시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시 신청 또는 갱신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과 같다.

[별표 15]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시험·분석 업무범위
가.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등 분야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 분야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 분야별로 적합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가. 시험연구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 분야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제품심사
공시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성분의 정성(定性)·정량(定量)분석을 하거나 유해성분(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다), 농약성분, 항생물질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3. 서류심사
가. 공시기관은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붙임의 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시기관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 심사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종합심사
가. 공시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공시기관은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시 신청 또는 갱신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과 같다.

[별표 15]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시험·분석 업무범위
가.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등 분야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 분야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 분야별로 적합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가. 시험연구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 분야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험책임자는 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보존하여야 한다.

3. 시설
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정실 및 보관실 등을 확보하여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품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의 취급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장비
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작물재배시험이나 농자재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장비는 항상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시험관리 규정
가. 시험에 필요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에 대하여는 오염,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 수행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와 시험실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시험 수행을 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한 시험결과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6]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제55조, 제57조, 제66조 및 제6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4)의 경우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같은 날 생산한 같은 품목의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생산자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모집단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 속하는 부분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시험연구기관

시험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험책임자는 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보존하여야 한다.

3. 시설
가. 시험연구기관은 시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정실 및 보관실 등을 확보하여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품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의 취급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장비
가. 시험연구기관은 작물재배시험이나 농자재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장비는 항상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시험관리 규정
가. 시험에 필요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에 대하여는 오염,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 수행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와 시험실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시험 수행을 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한 시험결과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6]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제55조, 제57조, 제66조 및 제6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4)의 경우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하며 위반행위의 원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업자재 모집단에 대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 나목의 "위반행위의 원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업자재 모집단"이란 부적합 원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 유효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라. 공시품의 표시변경, 판매금지, 회수·폐기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의 원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업자재 모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시험연구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법 제41조 제5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 제41조 제5항제4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법 제41조 제5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 제41조 제5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호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5호	지정취소		
<신 설>				

나.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공시취소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4항	판매금지	공시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판매금지	공시취소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	법 제43조 제1항제4호	공시취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5호	지정취소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5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공시사업자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공시취소		
2) 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공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7항	판매금지	공시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 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판매금지	공시취소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공시취소		

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다음과 같이 공시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가)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검출된 경우 [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나) 유기합성농약성분이 원료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로 검출된 경우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다)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라) 유기농업자재에 혼입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다음과 같이 공시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가)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검출된 경우 [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나) 합성농약성분이 원료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로 검출된 경우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다)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라) 유기농업자재에				

된 유해중금속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10퍼센트 미만 (2) 10퍼센트 이상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마) 효능·효과를 표시한 공시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이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분의 1 이상		경고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미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미만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6)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법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4항 전단	공시의 표시 변경	판매금지	

혼입된 유해중금속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10퍼센트 미만 (2) 10퍼센트 이상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마) 효능·효과를 표시한 공시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이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분의 1 이상		시정명령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미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미만		공시 취소 및 회수·폐기		
6)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법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을	법 제49조제7항	공시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판매금지	

다. 공시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공시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8조에 따른 공시 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공시 갱신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한 경우				

다. 공시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공시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8조에 따른 공시 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공시 갱신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44조 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8호 법 제50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9호	지정취소		
10)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신 설>				

3. 행정처분절차

<신 설>

<신 설>

가.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제49조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44조 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8호 법 제50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9호 법 제50조 제2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0)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0호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시품에 대한 공시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공시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공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8]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조직
가. 법인으로서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공시기관의 장과 인증심사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공시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공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공시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 인력
가. 공시 업무는 최근 1년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심사원(이하 "공시심사원"이라 한다)만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해당 전문분야 각 1명 이상씩 6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에는 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공시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시심사원은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1년 이내에 법 4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3) 수수료를 받고 공시를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공시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시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
3. 시설 및 장비
가. 공시기관은 공시 업무 수행에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및 구조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을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 신청자료와 시료의 보관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공시 업무규정
공시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심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공시 업무의 실시방법
나. 공시의 사후관리방법
다. 공시의 수수료
라. 공시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공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

라.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8]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조직
가. 법인으로서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공시기관과 인증심사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공시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공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공시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 인력
가. 공시 업무는 최근 1년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심사원(이하 "공시심사원"이라 한다)만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해당 전문분야 각 1명 이상씩 6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에는 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공시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시심사원은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1년 이내에 법 4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3) 수수료를 받고 공시를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공시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시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
3. 시설 및 장비
가. 공시기관은 공시 업무 수행에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및 구조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공시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을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 신청자료와 시료의 보관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공시 업무규정
공시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시기관은 공시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심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공시 업무의 실시방법
나. 공시의 사후관리방법
다. 공시의 수수료
라. 공시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공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

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공시의 심사, 결정, 활동 등 공시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공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시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19]

수수료(제71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징수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시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공시의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해당 인증기관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납부 대상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가.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연장하려는 자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신 설>			
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또	30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공시의 심사, 결정, 활동 등 공시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공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시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19]

수수료(제71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징수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시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공시의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해당 인증기관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납부 대상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가.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연장하려는 자	5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나. 인증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2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 한함)
다. 공시를 받으려는 자	30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는 갱신하려는 자			
다.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마.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0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0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3.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지정 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또는 공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라.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 받아야 하며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또는 갱신하려는 자			
라.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바.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0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0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3.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지정 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또는 공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라.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 받아야 하며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지 신·구조문대비표(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00.00.>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1부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적 합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 80g/㎡)

<신 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00.00.>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생년월일)

3. 소재지:

4. 교육훈련 분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신 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00.00.>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14일

신고인	기관명 (기관지정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변경항목	현행	변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심 사	변경 여부 판정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 80g/㎡)

<신 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0.00.00.>

과징금 [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징금 부과 내용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 사유	
신청 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신 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신설 2020.00.00.>

<신 설>

인증품등 재검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검사 의뢰 유해물질	수거장소

재검사 신청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품등의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귀하

첨부자료	재검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재검사 신청항목의 재검사 의뢰 유해물질은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재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신설 2020. 0. 00.>

제 호

인증품등 압류증

기호	번호		유기 농·임 산물 (유기 축산 물)	유기 가공 식품	비식용 유기 가공 품	무농약농 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압류품 인증사업자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압류품 제조·가공자(취급자)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압 류 품 명		
인증유효기간		
압 류 제품유형		
압 류 수 량		
압 류 사 유		
압 류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압 류 장 소		
압 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신 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신설 2020. 0. 00.>

유기농업자재 공시품 재검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검사 의뢰 성분	수거장소

재검사 신청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귀하

첨부자료	재검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재검사 신청항목의 재검사 의뢰 성분은 부적합 사유로 통보받은 성분(원료)명, 함량 등 재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신 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신설 2020. 0. 00.>

제 호

유기농업자재 공시품 압류증

기호	번호		토양 개량 용	작물 생육 용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용	병해 관리 용	충해 관리 용	병충 해관 리용

압류품 공시사업자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공시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압류품 제조·가공자(취급자)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공시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압 류 품 명		
공시유효기간		
압 류 제품유형		
압 류 수 량		
압 류 사 유		
압 류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압 류 장 소		
압 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시행규칙 별지 신·구조문대비표(개정)

현 행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31.>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양봉 제품, [ ]무농약농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개 정 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31.>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벌꿀 제품, [ ]무농약농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통합하여 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2. 31.>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통합하여 고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2. 31.>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제조・가공자: [ ] 유기가공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 양축용 유기사료, [ ] 반려동물 유기사료(95% 유기), [ ] 반려동물 유기사료(70% 유기)]] 취급자: [ ] 저장자, [ ] 포장자, [ ] 운송자, [ ] 수입자, [ ] 판매자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제조・가공자: [ ] 유기가공식품[[ ] 95% 유기, [ ] 70% 유기], [ ] 비식용유기가공품 [[ ] 양축용 유기사료, [ ] 반려동물 유기사료(95% 유기), [ ] 반려동물 유기사료(70% 유기)]],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 [ ] 저장자, [ ] 포장자, [ ] 운송자, [ ] 수입자, [ ] 판매자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여러 농축산물 동시에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고구마, 감자를 뜻하는 것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첨부서류 중 제5호는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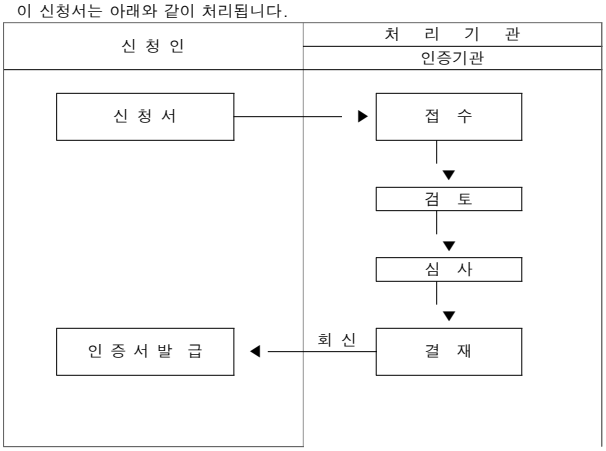

□ 동의 □ 미동의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여러 농축산물 동시에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곡류·두류·과실류·채소류·서류(고구마, 감자를 뜻하는 것임)·특용작물·약용작물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첨부서류 중 제5호는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임산물)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재배포장			재배품목	생산계획량 (kg)
소 재 지	지번	면적 (㎡)		

3. 재배 작기(作期)

파 종 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4. 경영관리

5. 재배포장·용수·종자

6. 재배방법

7. 생산물의 품질관리

※ 제4호부터 제7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	사 육 시 설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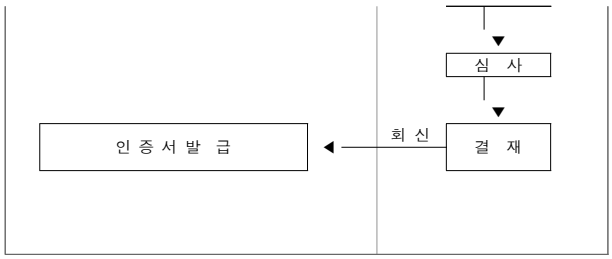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임산물)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재배포장				재배품목	생산계획량 (kg)
소 재 지	지번	면적 (㎡)	시설여부		

※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경우 시설여부와 함께 별도 표시

3. 재배 작기(作期)

파 종 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4. 경영관리

5. 재배포장·용수·종자

6. 재배방법

7. 생산물의 품질관리

※ 제4호부터 제7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	사 육 시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	
사 육 장(양봉장) 목 초 지 사 료 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3. 사육(양봉)규모 및 생산계획량

품목별	사육규모(두수, 군수)						생산계획량(마릿수,갯수,ℓ,kg)
	계	성축	육성축	자축	군수	벌통수	

4. 일반원칙 또는 경영관리
5. 사육장(양봉장) 및 사육(양봉) 조건
6. 자급사료 기반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8. 전환기간
9. 사료(먹이) 및 영양관리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1.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2. 가축분뇨의 처리 등

※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16.>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	

3. 생산·취급 계획량(kg)

품목명	계획량	품목명	계획량	품목명	계획량

	설			
	소재지	지번	면적(㎡)	
사 육 장 목 초 지 사 료 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3. 사육 규모 및 생산계획량

품목별	사육규모(두수, 군수)						생산계획량(마릿수,갯수,ℓ,kg)
	계	성축	육성축	자축	군수	벌통수	

4. 일반원칙 또는 경영관리
5. 사육장 및 사육 조건
6. 자급사료 기반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8. 전환기간
9. 사료(먹이) 및 영양관리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1.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2. 가축분뇨의 처리 등

※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16.>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2. 신청 내용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	

3. 생산·취급 계획량(kg)

품목명	계획량	품목명	계획량	품목명	계획량

4. 제조·가공 또는 취급방법

5. 원료 및 첨가물 관리

6. 해충 및 병원균 관리

7.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 재심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 수 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항목	
	재심사 신청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4. 제조·가공 또는 취급방법

5. 원료 및 첨가물 관리

6. 해충 및 병원균 관리

7.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 재심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항목	
	재심사 신청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자료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의4호서식] <개정 2016. 8. 26.>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신고시기	A:본신고[ ] B:사전신고[ ]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처리기한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FAX :)

제조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FAX :)

제품명	명 칭	성분등록번호	HSK번호
	한글명	신고 총중량/총금액 kg/ US$	
제품 유형		용도	
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제조회사명		주소	
수출회사명		주소	
수송편 종류 및 수송편명		선적항	선적일
		수입항	입항일
보관창고	(전화번호:)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B/L)번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첨부자료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의4호서식]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신고시기	A:본신고[ ] B:사전신고[ ]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처리기한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신고사료 구분	단미사료 [ ] 배합사료[양축용[ ], 반려동물용 95% 유기[ ], 반려동물용 70% 유기[ ]]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FAX :)

제조업자	제조업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FAX :)

신고내용	사료의 명칭		성분등록번호
	신고 총중량/총금액 kg/ US$		HSK번호
	제품명(영문명)		용도 및 형태
	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제조회사명		주소
	수출회사명		주소
	수송편 종류 및 수송편명	선적항	선적일
		도착항	도착(예정)일
	보관창고 (전화번호:)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B/L)번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견본 및 서류는 한	수수료 없 음

(제2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서류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정밀검사(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담당자)
	▼
신고 확인증 발급 ◀	결재 (검사기관장)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생산자용》

인증 구분		유효기간	
생 산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인증 품목		인증 면적	
인증 부가조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산물·임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 인

210㎜×297㎜[백상지 120g/㎡]

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제2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사
	▼
	정밀검사(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신고 확인증 발급 ◀	결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생산자용》

인증 구분		유효기간	
생 산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인증 품목		인증 면적	
인증 부가조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산물·임산물, □유기축산물, □유기벌꿀 제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직 인

210㎜×297㎜[백상지 12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인증 구분		유효기간	
제조·가공자 (취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취급 농축산물의 산지	※ 취급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품목			
인증 부가조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취급기준(무농약농산물등의 취급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 인

210㎜×297㎜[백상지 12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인증 구분		유효기간	
제조·가공자 (취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취급 농축산물의 산지	※ 취급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품목			
인증 부가조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취급기준(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제조·가공 또는 취급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직 인

210㎜×297㎜[백상지 12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6. 2.>

발급번호: 제 호

거래인증서
(Transaction Certificate)

공급자	업체명	
	주소	
구매자	업체명	
	주소	
거래내역	품목	인증종류
	수량	인증번호
	로트번호 (인증품 관리번호)	송장번호 선하증권번호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거래 내용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6. 2.>

발급번호: 제 호

거래인증서
(Transaction Certificate)

공급자	업체명	
	주소	
구매자	업체명	
	주소	
거래내역	품목	인증종류
	수량	인증번호
	로트번호 (인증품 관리번호)	송장번호 선하증권번호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거래 내용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 인

210㎜×297㎜[백상지 12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당 초	변 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	심사	변경 여부 판정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인증기관	직 인

210㎜×297㎜[백상지 12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당 초	변 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심 사	변경 여부 판정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017. 6. 2.>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제출합니다.

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법인(조직)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인증번호			
	연락처		제출일			
출 하 내 용	출하기간					
	주요 출하처					
	품 목	계획량(kg)	출하량(kg)	품목	계획량(kg)	출하량(kg)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제출합니다.

인증기관 귀하

신고인	법인(조직)명		생산자 수(작업장 수)			
	대표자 성명		인증번호			
	연락처		제출일			
출 하 내 용	<농축산물(취급) 실적> 1. 출하기간:					
	2. 인증구분	3. 품목	4. 계획량(kg)	5. 내수/수출	6. 출하처/국가명	7. 출하량(kg)
	<가공품·비식용가공품(취급) 실적> 1. 출하기간:					
	2. 인증구분	3. 제품유형	4. 계획량(kg)	5. 품목(명)	6. 내수/수출	7. 출하처/국가명	8. 출하량(kg)

210㎜×297㎜[백상지 80g/㎡]
(뒤쪽)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인증기관 [ ] 지정 / [ ] 지정 갱신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등 □ 국내( ) □ 국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작 성 방 법

<농축산물(취급) 실적>

1. 출하기간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증품 출하기간을 월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1~12월, 5~12월, 7~8월 등)
2. 인증구분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중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품목에는 인증받은 품목(농산물 예시: 사과, 배, 방울토마토 등, 축산물 예시: 젖소시유, 육계식육 등)을 모두 적습니다.
4. 계획량은 인증, 갱신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량을 적습니다.
5. 국내에 판매한 건은 내수, 해외로 판매한 건은 수출로 적습니다.
6. 내수인 경우 출하처는 ①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농협유통 등), ②공공급식(학교급식, 군급식 등), ③일반급식(기업체 등), ④전문유통업체(생협 등), ⑤로컬푸드매장, ⑥도매시장, ⑦가공(취급)업체 ⑧직판(온라인, 전화주문 등), ⑨기타(직접 기재) 중에서 한 가지를 적고, 수출인 경우 국가명(예시: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을 적습니다.
7. 출하량은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적습니다.

<가공식품·비식용가공품(취급) 실적>

1. 출하기간은 지난 한 해동안의 인증품 출하기간을 월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1~12월, 5~12월, 7~8월 등)
2. 인증구분은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중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제품유형에는 식품유형 등을 모두 기재하되 가공식품은 식품유형{예시: 장류 또는 70%이상 장류, 곡류가공품 또는 70%이상 곡류가공품 등}을, 비식용가공품은 양축용 또는 반려용 또는 70%이상 반려용 유기사료로 적습니다.
4. 계획량은 인증, 갱신 신청 시 작성, 제출한 계획량을 적습니다.
5. 품목명은 해당 제품명을 각각 적되 원료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이 다양할 경우 한 가지로 취합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6. 국내에 판매한 건은 내수, 해외로 판매한 건은 수출로 적습니다.
7. 내수인 경우 출하처는 ①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농협유통 등), ②공공급식(학교급식, 군급식 등), ③일반급식(기업체 등), ④전문유통업체(생협 등), ⑤로컬푸드매장, ⑥도매시장, ⑦가공(취급)업체, ⑧직판(온라인, 전화주문 등), ⑨동물병원, ⑩기타(직접 기재) 중에서 한 가지를 적고, 수출인 경우 국가명(예시: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을 적습니다.
8. 출하량은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적습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지정
인증기관 [ ] 지정 신청서
갱신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 유기농·임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벌꿀제품, □ 유기가공식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축산물, □ 취급자 □ 국내( ) □ 국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률」 제2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26조, 제30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규칙 제27조(제4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작 성 방 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규칙 제28조(제43조)의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4. 인증업무의 범위:
5. 유효기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률」 제2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26조, 제30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규칙 제27조(제4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작 성 방 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규칙 제28조(제43조)의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4. 인증업무의 범위:
5. 유효기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 인

210㎜×297㎜[백상지 12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17. 6. 2.>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사 진
3㎝×4㎝
(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55㎜×85㎜[PET-G카드, 연녹색]

(뒤쪽)

인증심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 제20조·제21조·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심사
2.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3. 심사 및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8. 12. 31.>

(앞쪽)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 인

210㎜×297㎜[백상지 15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17. 6. 2.>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사 진
3㎝×4㎝
(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55㎜×85㎜[PET-G카드, 연녹색]

(뒤쪽)

인증심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 제20조·제21조·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2.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3. 심사 및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8. 12. 31.>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5㎜×85㎜[PET-G 카드, 연노란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시판품조사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 과정 확인 및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3.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2. 31.>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개인사업자인 경우)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5㎜×85㎜[PET-G 카드, 연노란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1조의3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판매·유통 과정 조사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 조사,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3. 인증기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2. 31.>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 수 일자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개인사업자인 경우)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 면적	
	인증 품목	
	승계 사유	[ ] 상속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인증사업자 승계 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유기식품인증서 또는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 면적	
	인증 품목	
	승계 사유	[ ] 상속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인증사업자 승계 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기재합니다)
	소재지	전화번호

설 립 목 적	
승계 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승계 사유	[ ] 양수(讓受) [ ] 합법 [ ] 그 밖의 사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3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기재합니다)
	소재지	전화번호

설 립 목 적	
승계 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승계 사유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3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10㎜×297㎜[백상지 80g/㎡]

확인사항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신청내용	자재의 명칭		
	생산구분	[ ]국내	
		[ ]수입	수입국:
			제조회사명:
			제조장주소:
			수입상표명:
			인증기관:
	주성분(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상 표 명		
	자재의 구분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병해충관리
	세부 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2.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 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신청내용	자재의 명칭		
	생산구분	[ ]국내	
		[ ]수입	수입국:
			제조회사명:
			제조장주소:
			수입상표명:
			인증기관:
	주성분(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상 표 명		
	자재의 구분		[ ]토양개량, [ ]작물생육,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병해관리, [ ]충해관리, [ ]병해충관리
	세부 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2.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를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및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이전신청 내용	자재의 명칭		
	생산구분	[ ]국내	
		[ ]수입	수입국
			제조회사명
			제조장주소
			수입상표명
			인증기관
	주성분(원료)	성분(원료)명	

	시료는 100g(㎖)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를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및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이전신청 내용	자재의 명칭		
	생산구분	[ ]국내	
		[ ]수입	수입국
			제조회사명
			제조장주소
			수입상표명
			인증기관
	주성분(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상표명	
	자재의 구분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병해충관리
	세부 내용	

재심사 신청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주소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공시 내용	공시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변경신청 사항	변 경 신 청 사 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	수수료 없음

	함량(%)	
	상표명	
	자재의 구분	[ ]토양개량, [ ]작물생육,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병해관리, [ ]충해관리, [ ]병해충관리
	세부 내용	

재심사 신청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기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2 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주소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공시 내용	공시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변경신청 사항	변 경 신 청 사 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수수료 없음

	서 2. 변경 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시험·검사성적서 4. 시료 500g(ml) 1점.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1점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를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관리시스템 및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6. 2.>

(앞쪽)

공시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주소(사업장):
4. 자재의 명칭:
5. 자재의 구분:
6. 상표명:
7. 주성분(원료)의 종류 및 함량(%):
8. 유효기간:
9.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10. 최초 공고일:
11. 최초 공시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시기관의 장 직 인

210㎜×297㎜(백상지) 120g/㎡)

	2. 변경 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시험·검사성적서 4. 시료 500g(ml) 1점.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1점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를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관리시스템 및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6. 2.>

(앞쪽)

공시번호: 제 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주소(사업장):
4. 자재의 명칭:
5. 자재의 구분:
6. 상표명:
7. 주성분(원료)의 종류 및 함량(%):
8. 유효기간:
9.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10. 최초 공고일:
11. 최초 공시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시기관 직 인

210㎜×297㎜(백상지) 150g/㎡)

(뒤쪽)

유기농업자재 공시 사항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연월일	사용방법				비료등록 사항	원료종류별 투입비율	비고
	적용대상 (작물명)	사용시기	사용량	처리방법			

○ 병해충관리

연월일	사용방법					농약등록사항	원료 종류별 투입비율	비고
	적용대상 (작물명)	적 용 병해충	사용시기 (횟수)	사용량	처리방법			

※ 적용 병해충: 효능·효과 표시 공시품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 기간 3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공시 내용	공시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성분 (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유기농업자재 공시 사항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연월일	사용방법				비료등록 사항	원료종류별 투입비율	비고
	적용대상 (작물명)	사용시기	사용량	처리방법			

○ 병해충 관리

연월일	사용방법					농약등록사항	원료 종류별 투입비율	비고
	적용대상 (작물명)	적 용 병해충	사용시기 (횟수)	사용량	처리방법			

※ 적용 병해충: 효능·효과 표시 공시품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 기간 3개월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공시 내용	공시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성분 (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3.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성적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를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및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제출합니다.

(단위: 톤)

유기농업자재의 종류	제품명(상표명)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재고량(A-B)
		전년 이월	상반기	하반기	계(A)	상반기	하반기	계(B)	

끝.

공시기관 귀하

첨부 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3.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성적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를 받은 자의 정보와 공시 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및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제출합니다.

(단위: 톤)

자재 종	자재	제품(유기농업자재)																						
		상표	제조	수입가	생산량(수입량)				원료 사용현황						판매량(수출량)									재고(H=)
															상반기(E)			하반기(F)			계(G=E+F)			
					전년이월(A)	상반기 B	하반기 C	계(D=A+B+	원료류	원료량(%	구입	사용량(L, kg) 상반	하반	계	내	수	수출	내	수	수출	내	수	내수 수	)

끝.

발 신 업 체 명 직인

시행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8. 12. 3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 ] 지정 [ ] 지정 갱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정 항목	이화학적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시험([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병해충관리용), 잔류시험, 독성시험

지정 기준	인 력	지정신청 분야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 시험	잔류 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발 신 업 체 명 직인

시행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자재종류는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 관리용, 충해 관리용, 병충해 관리용으로 작성합니다.
2. 자재명은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작성합니다.(예: 유기질비료, 혼합유기질비료, 미생물 제재 등)
3. 상표명은 유기농업자재의 제품명(상품명)으로 작성합니다.
4. 제조국은 유기농업자재가 국내에서 제조되는 경우 "국내"로 작성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으로 작성합니다.
5. 수입국가명은 제조국이 "수입"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6. 원료 사용현황 중 원료종류는 규칙 별표 1의 허용물질의 명칭으로 작성합니다.
7. 원료 사용현황 중 원료함량은 해당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종류별 투입비율로 작성합니다.
8. 원료 사용현황 중 구입처는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 "국내"로 작성하고, 그 외는 "생산 국가명"으로 작성합니다.
9. 원료 사용현황 중 사용량은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종류별 사용량을 반기별로 작성합니다.
10. 판매량(수출량)은 내수와 수출을 나눠서 반기별로 작성하되, 수출이 있는 경우 수출국가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8. 12. 3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 ] 지정 [ ] 지정 갱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정 항목	이화학적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시험([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병해충관리용), 잔류시험, 독성시험

지정 기준	인 력	지정신청 분야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 시험	잔류 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시설명 (㎡)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 (비료효과[肥效]·비료피해[肥害])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잔류시험
		독성시험
	장비 대수 (명세 별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 지정 갱신[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신고	

	시설명 (㎡)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 (비료효과[肥效]·비료피해[肥害]) (농약효과[藥效]·농약피해[藥害])
		잔류시험
		독성시험
	장비 대수 (명세 별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 지정 갱신[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신고	

내 용	
지정서 분실 사유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 지정 [ ] 갱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시 분야	[ ]토양개량·작물생육, [ ]병해충관리			
인력	자재 분야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그 밖의 사항
	인원			

내 용	
지정서 분실 사유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 지정 [ ] 갱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시 분야	[ ]토양개량·작물생육, [ ]병해충관리			
인력	자재 분야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그 밖의 사항
	인원수			

	수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업무규정 4.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공시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 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사업자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12. 3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 ]변경신고서**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업무규정 4.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공시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 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사업자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12. 3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 ]변경신고서**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10일 변경승인 신청 2개월

신고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 분야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사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10일 변경승인 신청 2개월

신고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 분야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사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 휴업 [ ] 폐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 분야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신고사항	휴업·폐업기간 20 . . . ~ 20 . . .까지
	사 유
	제출서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공시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폐업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고, 휴업할 때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2.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 휴업 [ ] 폐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 분야
	유효기간 20 . . . ~ 20 . . .까지

신고사항	휴업·폐업기간 20 . . . ~ 20 . . .까지
	사 유
	제출서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공시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폐업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고, 휴업할 때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2.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앞쪽)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고자 (승계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유기농업자재 (승계대상)	구분	공시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최초공고일	유효기간
	공시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시 기관의 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앞쪽)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고자 (승계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유기농업자재 (승계대상)	구분	공시번호	자재의 명칭		최초공고일	유효기간
	공시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시 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수수료 없음

	2. 공시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승계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 고 자 (승계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기 관 명			
대 표 자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시기관을 승계한 사실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2. 공시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의 정보와 공시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7. 6. 2.>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승계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 고 자 (승계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사항	승 계 전	승계 후	승계 연월일
기 관 명			
대 표 자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시기관을 승계한 사실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고자(승계인)란에는 승계를 받는 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4. 승계사항란에는 승계 전후의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공시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3. 승계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동 의 서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자 정보와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고자(승계인)란에는 승계를 받는 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4. 승계사항란에는 승계 전후의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공시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